

#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

## 調 査 部

### 식품제조 영업허가기준

식품제조 영업허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**제 1 조(허가기준 적용업종)** 식품위생법 제23조의 3 제 4 호의 적용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다.

1. 과자류제조업(떡류는 제외한다)
2. 어육연제품 제조업
3. 다류제조업
4. 장류제조업
5. 두부류제조업
6. 보존음료수제조업

**제 2 조(적용제외대상)** 제 1 조 각호의 적용대상업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할 수 있다.

1. 제 1 조 제 1 호 내지 제 4 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1종 식품위생관리인을 두고 자체실험검사실을 설치하는 경우
2. 두부류제조업으로서 1종 식품위생관리인을 두고 시설이 마쇄과정으로부터 응고과정까지 자동기계화 되어 있으며 두부침수용 냉각수(3°~5°c) 제조시설, 두부보관용 냉장시설 및 운반상자 증기소독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 다만, 도서로서 도지사가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시설기준에 의할 수 있다.
3. 제 1 조 제 1 호 내지 제 4 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전량수출을 목적으로 하거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합작 또는 기술도입에 의하는 경우
4. 보존음료수 제조업으로서 전량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
## 부 칙

- ①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식품제조 영업허가기준(보건사회부고시 제81-47호)은 이를 폐지한다.